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5 제1호 나목 중 “제2호라목3)에 따른”을 “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제2호라목3) 행정처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를 “제2호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또는 2차 위반 시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를 “각각 1회에 한정하여 시설장교체의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장교체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별표 5의5 제2호 라목 중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를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로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고 4)를 3)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과 사목을 각각 아목과 자목으로 하고, 바목과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바.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2조 제1항			
1)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중대한 성폭력 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중 2)·3)에 해당하는 범죄를 제외한 범죄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시설 폐쇄		
2) 시설의 장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3) 종사자에 의하여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형법」 제300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5조(제15조의 경우 같은 법 제14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4)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한 경우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사. 시설에서 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이하 “범죄”라 한다) 및 시설 거주자·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개선 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